

제4차 졸업시험(모의시험) ‘선택과목 법전’ 지참 안내

1. 선택과목 법전 개인 지참

선택과목의 모든 응시생은 해당 선택과목 법전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

2. 선택과목 법전 개인 지참시 유의사항

- (1) 판례가 기입되어 있거나 가필되어 있는 법전은 지참을 금지함
- (2) 인쇄출력물 형태의 법전은 지참 가능함

3. 선택과목 법전 제출(등록) 및 검사

- (1) 선택과목 응시생은 그 과목 법전을 2021. 10. 19.(화) 민사법 사례형 시험 시작 전까지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- (2) 시험감독관은 위 (1)항에 의하여 제출된 선택과목 법전의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고 등록부에 기재한 후 보관함
- (3) 시험감독관은 제출·등록된 법전을 선택과목 시험 시작 전에 해당 응시생에게 다시 배부함
- (4) 다만, 응시생이 선택과목 학습을 위하여 제출·등록된 법전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민사법 사례형 시험 직후 해당 응시생에게 반환해 줄 수 있음. 이 경우 시험감독관은 선택과목 시험 시작 전에 해당 법전을 다시 검사한 후 활용하도록 함

2021. 10. 13.

법학전문대학원장